

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

(앞 쪽)

1. 제출인 인적 사항					
① 법인명(상호)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(성명)				④ 과세연도	
⑤ 소재지(주소)					
2.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					
⑥ 무형자산의 종류				⑦ 서면 약정일	
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				⑨ 개발 완료(예정)일	
3.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					
⑩ 법인명(상호)					
⑪ 국가명					
⑫ 소재지(주소)					
⑬ 업종					
⑭ 제출인과의 관계					
4. 정상원가분담액 산정					
참여 법인명					계
해당 연도	⑮ 참여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				
	⑯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				
무형자산	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				
	⑱ 해당 연도 참여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(⑮ - ⑯ - ⑰)				㉑
개발 원가	⑲ 기대편익				㉒
	⑳ 기대편익 비율(⑲의 각 난 ÷ ㉒)				
정상원가	㉑ 정상원가분담액(㉑ × ㉒)				
	㉒ 차액(⑱ - ㉑)				
5.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					
참여 법인명					계
변동된 기대	㉓ 변동 전 기대편익				㉔
	㉔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(㉓의 각 난 ÷ ㉔)	%			
편익 산정	㉕ 변동 후 기대편익				㉖
	㉖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(㉕의 각 난 ÷ ㉖)	%			
재조정액 산정 (㉗이 120% 이상 또는 80%이하인 경우)	㉗ 기대편익 변동비율(㉖/㉔)	%			
	㉘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				㉙
	㉙ 정상원가분담 총액(㉙ × ㉖)				
㉚ 원가 분담 재조정액(㉘ - ㉙)					
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원가등의 분담액 약정을 체결한 경우, 각각의 약정 별로 작성합니다. 약정 건별 참여자수가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

1.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"원"을 단위로 합니다.
2. ①~⑤: 제출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3. ⑥ 무형자산의 종류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와 유사한 성격의 무형자산인 경우 그 분류대로 기재하고, 그 외의 무형자산인 경우의 경우 그 종류를 간단히 기재합니다.
4. ⑦~⑨: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.
5. ⑩~⑬: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.
6. ⑭: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 - 가. 신고인(제출인): "본인"
 - 나.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·간접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나목): "지배"
 - 다.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·간접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나목): "피지배"
 - 라.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·간접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): "자매"
 - 마.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): "실질 지배"
 - 바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: "본점·지점 등"
7. "3.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"를 "4. 정상원가분담액 산정"의 참여법인명에 기재합니다.
8. ⑮: 원가등의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.
9. ⑯~⑰: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. ⑰은 음수값이 나온 경우 "0"으로 기재합니다.
10. ⑱: 기대편익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11. ⑳~㉓: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.
12. "5.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"은 기대편익이 변동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, "3.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"를 참여법인명에 기재하고 변동 전·후 기대편익 내용을 ㉔~㉖에 기재합니다.
13. ㉗~㉙: ㉗ 거주자(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)의 ㉗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이 ㉔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%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기재합니다.
14. ㉚: 동일한 원가등의 분담약정에 따라 분담한 실제 원가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. 이는 ⑰의 누적 총액입니다.